

예 산 총 칙

2018년도 추경 2 회 수정 1 차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39,628,242	16,188,847
일반회계	459,487,158	13,784,615
특별회계	80,141,084	2,404,233
공기업특별회계	30,139,788	904,194
상·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	30,139,788	904,194
기타특별회계	50,001,296	1,500,039
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	26,352,823	790,585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14,505,572	435,167
농공지구조성사업	2,351,607	70,548
의료급여기금운영	1,589,565	47,687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	1,112,662	33,380
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	4,089,067	122,672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 명세" 와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2,415,105천원, 재해·재난목적 예비비는 2,458,133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6,18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복구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

제 6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 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거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한다.